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190

발의연월일: 2022. 11. 9.

발 의 자:류호정・이은주・장혜영

심상정 • 배진교 • 강은미

강득구·최혜영·용혜인

김예지 • 유정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하여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하여 하도급대금 조 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로는 한계 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 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하여,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 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13조제9항신설 및 제25조제1항·제25조의3 등).

법률 제 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6(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 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하도급 대금연동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그 기준가격
 - 2. 제1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100분의 3 이상으로 변동 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연동한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
 - 3.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정· 개정 및 사용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이행점검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3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1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 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제10항"을 각각 "제11항"으로 한다.

⑨ 원사업자는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 는 제3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된 금액이 반영된 하 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제9항"을 "제10항"으로, "제10항"을 "제1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제13조제11항"을 "제13조제12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3조의5"를 "제3조의5, 제3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4, 제3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제9항을 위반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변경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금액과 제3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하도급대금 금액과의 차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3조의6(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
	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재료 가격
	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표준계약
	서(이하 "표준하도급대금연동
	계약서"라 한다)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
	라 한다)는 표준하도급대금연
	동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업자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u>1. 주요 원재료 품목 및 그 기</u>
	<u>준가격</u>
	2. 제1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의
	<u>가격 변동(100분의 3 이상으</u>
	로 변동된 경우로 한정한다)
	에 연동한 하도급대금 변경
	<u>방법</u>
	3.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하도급

대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 일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② 사업자등은 공정거래위원회 에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 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하도 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의 제정·개정 및 사용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이행점검

제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생 폭 략)

③ 원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 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 항·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 다. 이 경우 "목적물등의 수령 일부터 60일"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u><신 설></u>

	실태조사의 방법·절차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줴	6조(선급금의 지급) ①·② (현
	행과 같음)
	③
	<u>제10항제11항</u>
줴	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 ⑧ (현행과 같음)
	⑨ 원사업자는 제3조의6제1항
	에 따른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
	약서를 사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제3조의6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된
	금액이 반영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 략)

①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 정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 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제1호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 로 한다) 미만인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로부터 제조등의 위 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는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 19조,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 4조의4제1항, 제24조의5제6항,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5조 의2,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 5제1항, 제26조제2항, 제30조제 1항, 제33조, 제35조제1항을 적 용할 때에는 원사업자로 보고,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견기 업은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제 19조, 제21조, 제23조제2항, 제2 4조의4제1항, 제25조의2, 제33

<u>(10)</u> · <u>(11)</u> (현행	제9항 및 제10항
과 같음)	
<u>12</u>	<u>제11항</u>
<u>ਮ</u>	<u>]11항</u>
	<u>제11항</u>

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급사업 자로 본다.

1. • 2. (생략)

-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지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략)
 - ④ 원사업자가 제1항의 계약금 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 5일이 지난 후에 추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이자 에 관하여는 제13조제8항을 준 용하고, 추가 하도급대금을 어 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 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 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제7항·제9항 및 제 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목 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은 "추가금액을 받은 날부터 15 일"로 본다.
-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원사업 기자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 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1.·2. (현행과 같음)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
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u>제10항</u> <u>제1</u>
<u>1</u> 항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제13조제12항-

의하여 실질적으로 이 법의 적 용을 피하려는 행위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지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의 조사개시 대상이 되 는 하도급거래(제13조제11항이 적용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3년(제12조의3 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 가 끝난 날부터 7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나 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 만,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 내에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되거나 제24조의4제1항제1 호 또는 제2호의 분쟁당사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하도급거래 의 경우에는 거래가 끝난 날부 터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 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 저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3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①
제13조제12항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시정조치) ①
M2U도(시경도시) ①
제3조

조의5,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1 이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있다.

②·③ (생 략)

제25조의3(과징금)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발주자·원사업 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 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 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1. · 2. (생략)
- 3. <u>제3조의4</u>, 제4조부터 제12조

<u> 의5, 제3조의6제1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의3(과징금) ①

까지,	제12	2조의2,	제122	조의3,
제13조	: 및	제13조	의2를	위반
한 원/	사업기	지-		

4. ~ 6. (생 략) <u><신 설></u>

② (생략)

-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u>제2항</u>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 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④ 제1항의과징금에관하여는「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관

4. ~ 6. (현행과 같음)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3조제		
9항을 위반하여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하여 변경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원사업자에 대하여 실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		
급한 금액과 제3조의6제1항제2		
호에 따른 방법으로 변경하였		
을 경우의 하도급대금 금액과		
의 차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		
과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u>제3항</u>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및 제2항		

한 법률」 제102조, 제103조(제	
1항은 제외한다) 및 제104조부	
터 제10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	
한다.	